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경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1203호
- 다. 제출일자: 2016. 5. 30
- 라. 회부일자: 2016. 6. 2

2. 제안 사유

- 서울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 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명칭, 소재지, 자본금, 사업, 조직·정원, 재무회계 등을 기재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9조)

- 임원(사장, 감사, 이사)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 연임 가능 등

라. 공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에너지 관련사업 등

마.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32조)

-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며 시장에게 보고 등

바. 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33조~제35조)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 승인 등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공사 설립)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원안동의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부패없음
-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6)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6. 4. 7. ~ 4. 27.) 결과 : 해당없음
- (2)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 친환경에너지 이용, 보급 및 기술 개발, 에너지 복지 등을 담당하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대부분의 내용이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¹⁾

나.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근거

- 서울에너지공사는 법 제2조제2항제1호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 지방공사로 경영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및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및 결과검증('15. 10월~'16. 1월)
 - “공사 사업 타당성 적합”, “용역결과 적정” 결론
- 의견수렴을 위한 공사설립 주민공청회 개최('16. 2. 26)
 - 공사설립 각계 의견수렴, 참가자 및 토론자 대부분 긍정적 의견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행정자치부 협의 완료('16. 4. 7)
 - 행자부 현장실사 및 내부심의회 등 참석, ‘공사설립 필요성 인정’

1)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대부분의 조항이 법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6. 4. 7~27)
 - 총 6장 39조, 부칙 5조 등으로 공사의 목적, 자본금, 업무, 조직 등 규정
- 공사설립 심의위원회 개최('16. 4. 20)
 - 심의위원 7명 전원 공사설립 필요성 인정(찬성 6, 조건부찬성 1)
-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관련 공유재산 심의('16. 5. 10)
 - 심의위원 7명 전원 현물출자 '적정' 판정
- 서울에너지공사 조례안 및 출자동의안 시의회 제출('16. 5. 30)

2015년		2016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용역	주민공청회	행자부 협의	설립심의회	조례·정관 제정	임원발	자본금부	설립기
'15.7월	'15.10월~ '16.1월	'16.2월	'16.3월	'16.4월	'16.5~7월	'16.7~8월	'16.9월초	'16.9월말

다. 주요 검토의견

1) 자본금 출자(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1조원으로 하고,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관련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3,376억원에 대한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있음.
- 자본금은 전액 서울시가 출자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일부를 서울시가 아닌 외부에서 출자²⁾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임원과 직원(안 제8조~안 제19조)

-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임원과 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장이 추천한 4인, 서울시의회가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추천제외 : 서울특별시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공사의 사업(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8조)

- 안 제20조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진단,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 건설 및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지원 등을 열거하고 있음.
-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공사 출범이후 열병합발전 시설 건설이나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될 수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1조는 서울에너지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며, 안 제28조는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때의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있음.

4) 기금의 조성(안 제30조)

- 안 제30조는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사회의 의결과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³⁾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복지기금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기금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5) 사채 발행(안 제31조)

- 공사는 시장이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이는 법 제68조에서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로 기술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국어사전 용례>

차관을 들여오다. 차관을 끌어오다.

외국에서 1억 달러를 차관하였다. 10만 냥을 차관하였다.

6) 부칙

- 안 제2조에서는 공사설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 의한 관련 조례의 폐지라는 입법기술을 사용한 것임.
- 안 제5조는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협약, 계약 등은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이와 관련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단 노동조합에서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

다. [전문개정 2011.8.4.]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2016.3.30.>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9.21.>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1., 2012.7.31.>